

일본 간이우체국법의 일부개정

I. 머릿말

「간이우체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1990년 6월 14일 중의원에서 전회(全會)일치로 가결되고, 동년 6월 20일 참의원에서도 전회일치로 가결, 성립되어 6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근년 대도시(특히 東京)에서 地價가 상승하여 오피스페이스의 확보가 곤란해졌기 때문에 우체국이 매우 부족하여 우체국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대도시에 있어서도 간이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대도시에서 우체국의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객의 편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법률의 개요를 중심으로 국회(今回) 시책에 대하여 설명코자 한다.

1. 東京에서의 우체국 부족실태

1984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과거 5년간의 취급사무량 추이를 보면, 등기통상우편물의 접수는 東京都에서는 44.6% 신장하고 있는데, 東京都를 제외한 기타

전국지역에서는 13.8%의 신장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통상저금의 수불(受拂) 건수를 보면, 東京都에서는 40.6% 신장했으나 그밖에 전국의 지역에서는 27.7%의 신장에 그치고 있다. 이와같이 東京都에 있어서의 우정창구 취급사무량의 신장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히 東京都의 중심부에 있는 무집배 별정우체국의 취급사무량은 극히 많다. 예컨대 新宿區에 소재하는 무집배 별정우체국에서의 등기통상우편물은 전국 1局 1일평균 30통임에 대해 659통이고, 소포우편물의 접수는 전국 1局 1일평균 11개임에 대해 294개이다. 우표류의 판매 매수는 전국 1局 1일평균 1,085매인데 대해, 1만 7,829매로 전국평균의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번망(事務煩忙)이 심하고 창구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불편과 불안을 갖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1986년과 87년도의 2년동안 東京都구내에 민간금융기관은 137점포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체국은 겨우 4국밖에 설치하지 못했다.

I. 머릿말

1. 東京에서의 우체국 부족실태

〈표 1〉 東京都 中心部の 無集配별정우체국 郵便業務取扱狀況

區	郵便局名	登記通常(通)	小包(個)	郵便類販賣(枚)
千代田區	A	517	445	32,360
	B	219	740	17,423
中央區	C	323	171	19,658
	D	338	242	15,943
港區	E	450	452	18,660
	F	548	451	23,958
新宿區	G	659	121	17,829
	H	353	294	15,832
渋谷區	I	346	299	19,837
	J	527	222	18,600
上記 10 局 平均		428	344	20,010
東京郵政局管内 1 局 平均		84	43	3,264
全國 1 局 平均		30	11	1,085

註：1988年 4月の 1日平均 取扱數

2. 근래의 간이우체국

간이우체국법은 1949년 「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해야할 사무를 지방공공단체, 기타 이 법률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우정사업의 역무를 지방벽지에까지 넓혀 국민이 간편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간이우체국은 지금까지는 사무량이 매우 적고 일반우체국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하게 불경제적인 지역에 설치해 왔다. 위탁선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충분한 사회적신용이 있고 우정창구사무를 적정하게 행함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되어있다.

1990년 3월 현재 전국에 4,523국의 간이우체국이 있다. 이중 지방공공단체가 수탁하고 있는것이 609국(13.5%), 조합이 수탁하고 있는것이 891국(19.7%), 개인이 수탁하고 있는것은 3,023국(66.8%)으로 되어있다.

1990년 3월말 지역적인 분포상황을 보면,九州지방이 가장 많은 946국(전국의 20.9%), 다음으로 東北지방 694국(15.4%), 中國지방이 519국(11.5%)으로 되어있다. 또 都道府縣별로 보았을 경우 北海道가 가장 많은 345국, 다음으로 鹿兒島縣이 283국, 그리고 長野縣이 242국으로 되어있다. 가장 적은곳은 東京都로 9국 다음으로는 神奈川縣 15국, 그 다음이 沖繩縣의 19국으로 되어있다.

간이우체국 창구에서는 수요가 많고

취급이 비교적 용이한 사무에 한해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표류의 판매, 속달, 등기, 소포의 접수, 통상저금·정액저금등의 예입과 지급, 우편환의 발행·지급, 간이보험·우편연금의 신규계약, 보험료 수입등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 국제우편물의 취급, 주택적립 우편저금의 수불, 진학적립 우편저금의 수불, 연금·은급등의 지급, 국제의 판매, 간이보험·우편연금의 대부해약등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간이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편창구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우체국 보완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3. 법률개정의 개요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규정의 개정

법률의 목적규정중 종래는 우편사업의 의무가 「지방벽지에까지 넓히는 것」이었으나, 금번에는 「일층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도시에 있어서도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우정창구기관은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설치하는것으로 하고있다. 우정창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우체국을 설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사무량이 현저하게 적은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설치했을 경우, 사업운영상 심히 불경제적으로 되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이우체국을 설치하여왔다.

근년 대도시에서는 지가가 높게 상승하여 오피스베이스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우체국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가 진척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우체국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대도시에 있어서의 우체국 부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대도시에도 간이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것이 본 법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금후 간이우체국의 역할은 「우정창구서비스를 우체국이 없는 지방벽지에까지 넓히는 것」에 더하여, 사회경제정세의 현저한 변화에 적응하여 경제적으로 「우체국이 현저히 부족한 대도시에서도 우정창구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목적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나.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의 개정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종래에는 「사무량이 극히 적기때문에 위탁하는 편이 경제적인 경우」라고 되어있던것을 「사무의 량, 취급장소 또는 취급 시간으로 보아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로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었다.

- ① 「사무량으로 보아 경제적인 경우」란, 우정창구사무의 량이 현저하게 적어 1인정도의 사무량밖에 없는

3. 법률개정의 개요

* 목적규정의 개요

*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의 개정

경우이며, 현재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

- ② 「사무의 취급장소로 보아 경제적 인 경우」란,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며, 대도시에 있어서도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가 설정한 규정이다. 무집배 별정우체국을 설치하는 경우는 120㎡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간이우체국을 설치하는 경우는 5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족하므로, 대도시에서 50㎡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간이우체국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
- ③ 「사무의 취급시간으로 보아 경제적인 경우」란, 우체국의 창구취급 시간을 설치장소의 영업일, 영업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직원의 복무표가 중복되어 필요 이상의 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이다. 이것도 대도시에서 우정창구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기위해 추가한 규정이다.

예컨대, 창구취급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우정창구를 백화점속에 설치하는 경우, 창구취급시간은 9시간으로 되어 우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되므로 우체국을 설치하면 필요이상의 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백화점에 우체국창구사무를 위탁하면, 그 취급시간은 백화점 직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다. 수탁자 자격의 추가

종래 간이우체국의 위탁선(先)은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고 또한 우정창구사무를 적절히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종래 회사등의 법인은 간이우체국의 위탁선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간이우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우정창구사무의 위탁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은 회사등 법인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법인에게 우정창구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면, 대도시에서의 간이우체국 설치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우정사업으로서 잇점이 매우 크기때문에 수탁자의 자격에 법인을 추가하게 된것이다.

라. 기 타

기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

- ① 종래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 개인중 둘 이상이 위탁계약의 체결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공단체, 조합, 개인의 순위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 ② 종래 취급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취급량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탁사무의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 ③ 종래 위탁사무의 감독을 행하는 우체국장은 집배우체국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우정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장으로 개정했다.

* 수탁자 자격의 추가
* 기타

4. 대도시형 간이우체국의 개요

이번 법률개정에 의하여 대도시에 설치될 간이우체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금후 구체적인 설치를 위하여 관계방면과 정력적으로 절충하며, 1990년 가을에 제1호 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 설치지역

東京都區・構浜市・名古屋市 및 大阪市の 중심부에 설치한다. 1990년도 예산에는 10국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가 계상(計上)되어있고, 우체국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東京都區에의 설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타의 도시에서도 적어도 1국은 설치하기로 한다.

나. 위탁선(委託先)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거나 왕래하여 창구를 이용할것으로 생각되는 백화점, 터미널역 주변의 쇼핑센터라든가 대규모의 임대빌딩등에 위탁할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 창구취급시간

위탁사무의 취급일, 취급시간은 위탁선의 영업일, 영업시간과 같게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백화점에 위탁하는 경우, 백화점의 영업일, 영업시간에 맞추어 취급시

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업하며, 취급휴무일은 목요일로 한다.

라. 취급사무

대도시형 간이우체국은 우정창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것이므로 상당한 사무량이 예상되며, 우정창구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취급이 용이한 사무에 한하여 취급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표류의 판매, 등기·소포등의 접수, 우편저금의 예불, 우편대체의 수입, 간이보험 보험료의 수입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마. 배치할 기기(機器)

우표·엽서판매기, ATM등을 배치하기로 한다.

바.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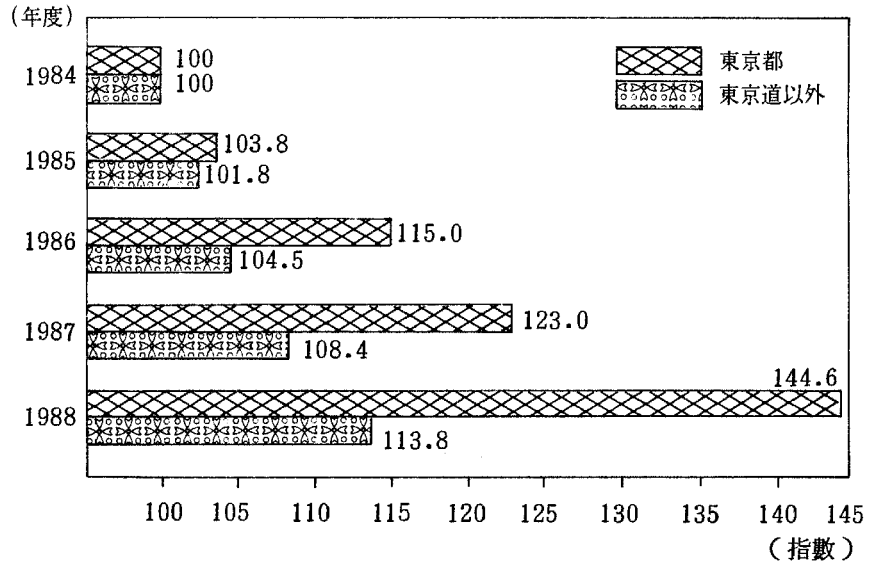
대도시형 간이우체국의 설치공간은 50㎡ 정도로 하고, 창구에서는 2인 정도의 인원이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끝으로 이번 법률개정에 의해 대도시에도 간이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우정사업은 나라가 스스로 역무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금후에도 우체국의 설치에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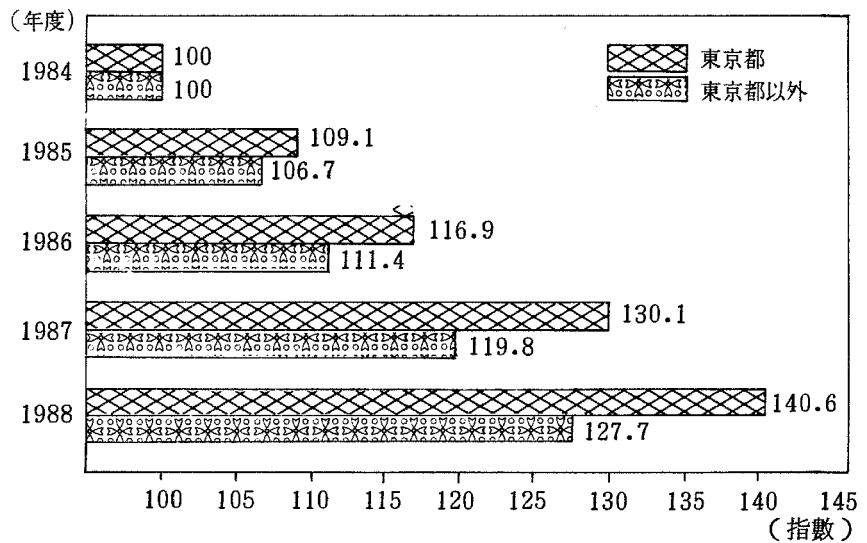
- 4. 대도시형 간이우체국의 개요
- * 설치지역
- * 위탁선(委託先)
- * 창구취급시간
- * 취급사무
- * 배치할 기기(機器)
- * 기타

[그림 1-1]取扱事務量の推移

〈登記通常郵便物數〉



[그림 1-2]〈通商貯金受拂口數〉



註:數字는 1984년도를 100으로 한 指數를 나타냄.

(우무국, 시설과)
(Post 21, 1990. 7)